

美國 通商法에 관한 研究

김영구* · 이재승**

A STUDY ON U.S. TRADE ACT

Young-Koo,Kim · Jae-Sung, Lee

Abstract

It is understood that U.S. Trade Act means generalized law about trade transaction in U.S.A. Namely, Act about Import Procedure and Tariffs rates, Act about Import Restriction Law, etc.

U.S. Trade Act Protects its own industries against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of Foreign Countries through Antidumping Dut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especially U.S. Trade Act Code 301.

Antidumping Dut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re most frequent measure to impose Tax since 1980.

Above 2 Acts stipulated through U.S. Trade Act in 1930. After revised several times, they are consolidat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They have characteristic mark to impose duty on commodity under unusual conditions.

Thus, consequently, we would like to analyze and evaluate under the basic ideology of International Trade Act to reinforce free, fai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order.

I. 序 論

*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 日本 早稻田大學 研究員

美國에서 通商法이라고 말할때는 貿易去來에 관한 매우 광범위한 法體系를 말하는 것으로서 輸入節次와 關稅에 관한 法, 輸入制限措置에 관한 法, 輸出 規制法, 獨占禁止法, 租稅法 등을 포함한다.

外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관한 美國通商法上의 救濟措置로는 反dumping關稅 賦課, 相計關稅 賦課, 通商法 301條에 의한 規制, 關稅法 337條에 의한 規制 등을 들 수 있고 公正한 貿易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通商法 201 條에 의한 緊急輸入 規制措置를 가할 수 있다.

이 중 反dumping關稅制度 및 相計關稅制度는 가장 빈번히 사용된 조치로서 1980년 이후 올해까지 무려 1,000건 이상의 關稅賦課 청구가 이制度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反dumping關稅制度는 外國企業의 公定價格 以下の 販賣에 대한 規制이며 相計關稅制度는 外國政府의 輸出品이나 輸出에 대한 補助金 支給의 效果를 相殺하기 위한 規制이다.

두 制度는 1930년 美國 通商法에 의해 規定되고 있는데 여러차례의 改正을 거친 뒤 1988년의 綜合貿易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하여 보다 强化되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關稅를 賦課하도록 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두 制度의 法規定과 實際運營에 관하여 자유롭고公正한 國際去來 秩序 確立이라는 國際經濟法의 基本理念을 바탕으로 分析 評價하고자 한다.

II. 相計關稅制度

1. 意義 및 沿革

원래 한 나라가 輸出하는 商品에 대해 일정한 補助金을 支給하는 경우 그商品은 그 만큼 싼 價格으로 輸出되어 競爭力이 强化됨으로써 輸出國간 또는 補助金을 지급한 國家와 輸入國간의 比較優位에 變化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국은 이러한 補助金 지급을 不公正 貿易去來로 보아 지급된 補助金의 額數 만큼을 相計도록하는 關稅를 賦課하게 된 것이다.

美國法上 최초의 相計關稅制度는 러시아의 美國에 대한 설당 輸出시 美國關稅를 보충해 주기 위한 補助金 지급에 대항하기 위해 1897년에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純粹效果(Net effect)니 輸出에 대한 獎勵金(Bounty)이니 交付金(Grant)이니 하는 등의 概括的인 用語가 使用되었으며 이것은 이후 약 80여년간 변동없이 쓰여지다가 1974년 貿易法 (The Trade Act of 1974)에서 美國產業에의 被害要件 (Injury)이 처음 導入되고 1979년 貿易協定法 (The Trade Agreement Act of 1979)에서 補助金(Subsidies)의 概念의 정의됨과 동시에 GATT, 즉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補助金協約(Subsidies Code)加入國으로부터

輸入되는 商品에 대한 被害要件(Injury)이 追加되었다.¹⁾

2. 補助金의 概念

相計關稅制度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相計關稅를 賦課할 수 있는 外國의 補助金 (Subsidies)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GATT 제 16조 1항에 의하면 補助金에는 한 나라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自國領域으로 부터의 生產品 輸出을 增加시키거나 自國領域에 대한 生產品의 輸入을 減少시키는 效果를 가진 것으로서 特定한 形式의 所得 또는 價格支援이 包含된다. GATT體制의 補助金은 工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 1次 生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 國內補助金 또는 生產補助金으로 分類되고 이중 工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은 엄격히 規制되지만 1次生產品에 대한 輸出補助金은 制限의로 認定되며 國내補助金 또는 生產補助金은 허용된다.²⁾ 그러나 GATT 그 자체는 輸出補助金을 定義하지 않았고 다만 “GATT 제 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解釋과 適用을 위한 協約“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6,7 and 32 of the GATT), 즉 補助金 協約(Subsidies Code)의 부속서 A에서 다음과 같은 項目을 例示하고 있다.

- 1) 政府가 輸出業績 達成을 위해 企業이나 產業에 直接 補助金을 지급하는 경우
- 2) 貨幣價值 維持制度 또는 이와 유사한 慣行으로서 輸出에 혜택을 주는 경우
- 3) 輸出貨物의 國內運送料, 其他 運賃에 대하여 國內 貨物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4) 國內 消費用 商品의 生產에 提供되는 것보다 유리한 條件으로 輸出商品의 生產에 대한 部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5) 輸出과 관련하여 企業이나 產業의 直接稅 또는 社會福祉負擔金 등을 免除 또는 輕減하는 경우
- 6) 國內 消費用 物品에 인정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輸出商品에 대한 直接稅 賦課基準에 적용하는 경우
- 7) 輸出商品에 대해 同種의 商品이 國內 消費用으로 販賣되는 경우에 그商品 및 流通에 賦課되는 間接稅額을 超過하여 間接稅의 免除, 輕減을 인정하는 경우
- 8) 國內 消費用으로 販賣되는 同種商品의 生產에 이용되는 物品과 서비스에 賦課되는 누적적 間接稅의 免除, 輕減, 猶豫 등의 경우

1) P.D.Ehrenhaft, Remedies Against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Nonspecialist 483, 497 (1993)

2) T.J.Schoenbaum,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the GATT: An Evaluation and a Proposal for a Unified Remedy for Unfair International Trade, 30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77 (1987) (김형진 역,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미국통상법, 1990, P.49)

- 9) 실제로 賦課되었거나 賦課되어야 할 關稅額을 超過하여 關稅를 減免 또는 還給하는 경우
- 10) 長期的인 運用經費 및 損失報償에 不充分한 比率로 輸出保險制度를 운영하는 경우
- 11) 政府가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낮은 利率로 輸出金融을 提供하거나 또는 輸出業者가 輸出信用의 提供을 받기위해 지출한 經費를 政府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 12) 기타 GATT 제 16 조가 뜻하는 輸出補助金을 構成하는 公共資金의 支出

美國은 위의 補助金 協約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로서 지금까지 相計關稅를 가장 많 이 賦課한 나라이다. 그러나 美國法上의 補助金의 概念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19 USCA 제1677은 補助金을 (1)補助金 協約 附屬書에 例示된 위 輸出補助金 및 (2)國內補助金으로서 (a)商業的 觀點과 부합하지 않는 조건에 의한 融資 또는 融資保證의 提供, (b)特惠的 利率에 의한 商品 또는 서비스의 提供, (c)特定產業에 의해 초래된 損害의 保全을 위한 資金提供 또는 負債蕩滅, (d)製造 生產 또는 流通上 經費나 費用의 負擔 行爲 등, GATT의 補助金 協約에 예시된 項目을 超過하여 광범위하게 規定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보조나 지원이 여기의 補助金에 해당하는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一般的으로 (1)문제된 補助金이 輸出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또한 어떤 企業이나 產業에 특정적으로 제공된 경우에 相計關稅賦課의 대상이 된다.³⁾相計關稅는 外國政府의 不公正 貿易行爲에 대한 規制이므로 外國企業의 不公正 貿易行爲에 대한 規制인 反dumping關稅와 중복적으로 賦課할 수 있다. 그러나 非市場經濟國家(Non-market Economy Country)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經濟가 國家의 간섭에 의해 움직여지는 이들 國家의 經濟體制의 성격 때문에 相計關稅의 관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1986년 Georgetown Steel Corp. v. U.S.事件에 대한 美聯邦抗訴法院의 判決로서 確立되었다.⁴⁾

일단 補助金이 存在한다고 인정되면 당사자가 받은 純粹補助金(Net Subsidy)을 決定하여 이에 대하여만 相計關稅를 賦課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補助金總額으로 부터 (1)當事者가 補助金을 받을 資格을 獲得하거나 이를 받기 위해 支出한 費用, (2)補助金 受領이 지연되는 경우 생기는 價值의 喪失, (3)補助金을 相計하기 위해 對美 輸出商品에 賦課된 輸出稅등의 公課金 등을 控除하도록 하고 있으나, 經濟發展을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입주조건이 불리한 지

3) See Certain Steel Company from Belgium, 47 Fed. Reg. 304 (1988).

4) Georgetown Steel Corp. et al., v. U.S., 801 F.2d 1308(Fed. Cir. 1988). 1983. 11. Georgetown Steel사 등 4개의 탄소강선재 제조업체가 체코와 폴란드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탄소강선재가 그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제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상계판세제조사를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상무부는 체코 폴란드등의 비시장경제국 가로서 상계판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위 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였던바 그 법원은 상계판세 법령이 해당국가의 경제체계에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상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결과 그 법원은 상무부의 주장을 취하여 다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파기 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상소가 없어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역의 개발을 위한 補助金과 같이 補助金의 效果를 相殺시키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問題點이 있다. 또한 1984년의 貿易 및 關稅法(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84)은 輸出補助金뿐 아니라 어떤 商品이 美國에 輸出되기 전의 原資材 生產者에 提供된 補助金이 있을 경우에도 生產된 最終商品에 대해 相計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原資材補助金 (Up-stream Subsidies)에 대한 相計關稅까지 包含하고 있는 바, 이는 輸出補助金에 대해서만 相計關稅를 허용하고 있는 GATT의 補助金 協約(Sub-sidies Code)에 정면으로 背馳되는 것이다. 근래 美國이 우리나라에 대해 輸出補助金 또는 國內補助金으로 인정하여 相計關稅를 賦課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輸出補助金으로 認定한 것은 (1)韓國銀行의 再割引過程에서 일반금융의 30%에 비해 70%까지의 재할인이 되는 短期輸出金融 (2)租稅減免 規制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해 法人稅가 일정기간 猶豫되는 輸出損失 準備金과 海外市場開拓 準備金 및 價格變動 準備金 (3)租稅減免 規制法 제25조에 의해 外貨獲得用 事業에 인정되는 高速減價相却制度 등이며, 國내補助金으로 認定한 것은 (1)關稅法 제28조에 의해 國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일정한 物品의 輸入에 인정되는 技術開發 主導產業 臨時減稅와 (2)鐵鋼工業育成法 施行令 제8조에 의해 鐵鋼工業者에 인정된 港灣使用料의 引下 등이다.

1. 意義 및 沿革

III. 反dumping 關稅制度

1945

國際貿易에 있어서 덤플링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國內市場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輸出市場에서商品을 販賣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로 商品 生產者에게 일정한 國內市場 保護裝置가 있을 때 행해진다.

dumping의 長短點에 관하여는 國際經濟學上으로는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自國의 商品市場을 保護하기 위한 갖가지 反dumping 裝置를 마련하고 있는데 GATT의 反dumping 規約 (Antidumping Code)은 當事國들이 遵守해야 할 덤플링規則을 規定하고 있으며 美國도 1979년 이를 採擇한바 있다. 美國 通商法上에는 두개의 反dumping法이 있는데 그 하나는 1916년의 反dumping法으로서 이는 유럽제국의 價格差別에 대항하기 위하여 個人에게 提訴權을 認定하여 덤플링 外國企業에게 民事上 또는 刑事上 責任을 賦課하도록 한 獨占禁止法 유형의法律로서 사실상 現在까지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다.⁶⁾ 그 둘은, 1930년 反dumping法으로서 이는

5) 신영무,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법 개요” 유기천박사 고화기념 법률학의 제문제(1989), p.816.

6) J.H.Barton & B.S.Fishe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282 (1986)

1921년의 反dumping法을 기본틀로 하여 行政的인 조치를 통하여 反dumping關稅를 賦課하도록 한 것으로서 오늘날 美國 通商法上의 反dumping關稅制度는 이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다. 이 法은 1974, 1979, 1984, 1988 등 여러차례 改正되었으나 주로 절차적인 면에서의 개정이고 실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dump이란 어떤 종류의 外國商品이 美國內에서 公正한 價格以下로 販賣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商品의 輸入 또는 輸入을 위한 販賣로 인하여 美國內 產業이 (1)實質的인 被害를 받거나 (2)實質的인 被害의 위협을 받거나 또는 (3)美國內 產業의 確立이 實質的으로 沮害되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商品의 外國市場價格이 美國內 價格을 超過하는 額數만큼 反dumping 關稅를 賦課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dump의 고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단지 客觀的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判斷하게 되는데 dump의 存在與否 및 마진을 決定하기 위하여는 결국 公正價格(Fair Value)이 무엇인가가 열쇠가 된다.

2. 公正價格의 決定 - dump마진 算出

1930년 反dumping法은 무엇이公正價格以下の 販賣인가를 定義하지 않고 다만 美國市場에서의 價格과公正價格에 대한 實體적인 동의어로 使用되는 外國市場 價格 또는 本國市場 價格을 比較함으로써 dump마진을 算定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商務部는 다음의 세가지 方法을 使用하여 美國內에서 어느 商品이公正한 價格以下로 販賣되었는가를 決定한다.

- 1) 輸入商品의 美國市場價格과 輸出國市場價格의 直接的 比較,
- 2) 輸出國內에서 당해商品의 충분한 販賣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美國 市場 價格과 第3國市場에서 販賣된 商品價格과의 大體的 比較
- 3) 輸出國 市場과 第3國에서의 販賣에 基礎하여 外國 市場價格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價格들이 商品의 費用보다 낮은 경우 推定價格(Constructive Value)과 美國市場價格의 比較,

dump判定의 基本이 되는 美國市場價格은 그 商品의 購買價格이나 輸出商 販賣 價格(Exporter's Sales Price : ESP)중 適當한 것을 뜻하는데 購買價格이라 함은 美國으로의 輸出을 위해 商品의 再販賣業者나 製造業者 또는 生產者로 부터 輸入日 이전에 購買되거나 購買하기로 합의된 價格으로서 dump마진 算定의 基準으로 쓰기 위하여는 購買價格이 商品容器나 包裝費, 船積費 등을 包含하지 않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키며 輸入關稅, 輸出국에서 賦課된 輸出稅 등을 공제한다. 輸入商 販賣價格은 輸入日 이전이나 이후에 輸出業者에 의해서 또는 그의 계산으로 美國內에서 販賣되거나 販賣되기로 合意된 價格으로서 이는 輸出이 輸出商과 관련있

는 美國內 相對方 예컨대 子會社등의 再販賣를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使用된다. 이 경우에도 購買價格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價格調整이 행해진다.

比較의 對象인 外國市場價格 (Foreign Market Value :FMV)은 그 商品이 정상적인 去來에서 그리고 通常的인 數量의 去來에 있어서 輸出國의 주된 市場에서 同種 또는 類似한商品이 販賣되거나 또는 販賣되도록 제의된 價格으로서 (Home Market Price) 만일 이같은 輸出國商品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는 商品數量이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경우에는 美國 이외의 第3國에 대한 輸出價格 (Third Country Price) 또는 輸出을 위해 제의된 價格으로 比較한다.

이러한 第3國 輸出價格으로도 比較할 수 없는 경우에는 商品의 推定價格을 외 國市場價格으로 간주하여 美國市場價格과 比較하는데 推定價格에는 (1)材料費 및 製造費 (2)通常製造費의 10%이상에 상당하는 一般經費 (3)製造費 및 通常經費의 8%이상에 해당하는 利潤 (4)商品을 美國으로 船積하기 위해 필요한 通常經費 및 包裝費 등이 包含된다. 이는 결국 生產原價에 利潤을 附加한 價格을 뜻한다. 非市場經濟國家 (Nonmarket Economy Country)로 부터의 輸入品에 대하여는 外國市場價格(FMV)을 算定하기 위해 第3國市場價格이나 推定價格이 이용되고 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에 대하여는 여러나라에 대한 輸出價格 중 가장 높은 것을 이용한다. 商務部가 外國市場價格 산출을 위해 輸出國販賣價格 또는 第3國 輸出價格을 채택한 경우에는 商品을 美國으로 선적하기 위해 필요한 通常經費 및 包裝費 등을 부가시키며 販賣數量, 販賣與件, 商品의 物理的特性 및 交易水準 등의 점에 관하여 價格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立證責任은 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會社에게 있고 만약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덤핑혐의企業에 불리한 利用 가능한 최선의 證據에 의하여 調整한다.

이러한 증거법칙은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企業에게 一方的으로 불리하게 作用하는 것으로 극히 不公正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뿐만 아니라 商務部는 完製品이 製造者와 관계없는 購買者에게 販賣되기도 전에 美國內에서의 加工을 거쳐야 할 部品의 輸入에 대해서까지 덤핑關稅를 賦課하고 있는 바 이는 GATT의 反dumping協約이 덤핑判定을 外國의 貿易에 투입된 完製品에만 賦課하도록 한 것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外國市場價格을 決定함에 있어서 商務部는 生產費 以下の 販賣價格을 무시하고 推定價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덤핑마진을 增加시키게 된다.⁷⁾ 이러한 것들이 美國의 反dumping 關稅制度上の 덤핑마진 算定構造를 지극히 自의적이고 不公正한 것으로 만들어 자유롭고 公正한 國際去來秩序의 確立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IV. 相計關稅 및 反dumping關稅의 調查節次

7) Ehrenhaft, supra note 1, at 490

1. 概 要

相計關稅法과 反dumping關稅法은 關稅賦課를 위하여 유사한 調查節次를 두고 있다. 즉 相計關稅의 경우 문제된 商品의 販賣에 補助金이 관련되었는가, 또는 반dumping 關稅의 경우에는 문제의 商品이 公正價格 以下로 販賣되었는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商務部의 國際通商國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ITA)이 담당한다. 補助金 또는 垂價의 存在가 인정되면 다음에는 補助金을 지금 받은 또는 垂價으로 輸出된 商品이 美國에 輸入되어 美國의 產業에 實質的으로 被害를 입했거나 혹은 被害의 위협이 있는지를 調査하여야 하는데 이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獨립된 委員會인 國際貿易委員會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가 담당한다. 다만 相計關稅의 경우 被害要件은 GATT의 補助金 協約에 加入한 國家가 輸出한 商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타의 國家로부터 輸入된 商品에 대해서는 단지 補助金의 支給事實만 있으면 相計關稅를 賦課한다.

2. 反dumping 關稅의 경우

(가)反dumping關稅를 賦課하기 위한 調査의 開始는 商務部가 직권으로 判斷하여 合理的인 根據가 있다고 認定할 때 또는 利害關係 있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실제로 調査過程上 利害關係 있는 美國측 產業들의 협조가 절대로 必要하기 때문에 商務部는 직권에 의한 調査開始를 꺼리고 있다.⁸⁾

이해 당사자는 請願書를 商務部의 ITA와 ITC에 같은 날에 提出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ITA가 調査開始決定을 내리면 調査가 開始되고 調査가 開始되면 問題된 商品의 輸入業者에게 通知하고 그 輸入業者는 垂價 또는 實質的 被害의 存在與否에 관해 資料를 提出하여 防禦할 수 있다. 즉 理論上 輸入業者를 상대로 調査가 進行되게 되는데 사실은 輸出業者나 製造業者가 輸入業者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一般的으로 調査는 調査開始決定을 包含하여 ITA 및 ITC의豫備 및 最終判定등 다섯 단계에 걸쳐 행하게 된다.

첫째, ITA는 利害當事者의 請願書가 提出된 날로부터 20일내에 請願書가 關稅賦課에 필요한 요인을 주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主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與否를 判斷하여 긍정되는 경우에 調査開始를 決定할 수 있다. 이때 調査를 開始하지 않기로 決定하면 節次는 終了된다.

8) T.W.Kassinger & C.R.Johnson, Jr.,Antidumping Investigation, in Law and Practice of United States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1, 13 (1989)

둘째, ITA가 調査開始를 決定하는 경우 그 通知를 받은 뒤 45일 이내에 ITC는 문제된 商品의 輸入이 美國의 產業에 實質的인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을 가할 합리적인 정후의 存在與否를 예비적으로 判定하여야 한다. 만약 이 判定이 부정적이면 調査는 終結된다.

세째, ITC의豫備判定이肯定의이면 ITA는申請이接受된 뒤 160일 이내에(복잡한 경우 210일까지 연장가능)判定 당시 이용가능한最善의證據를根據로問題된商品이公正價格以下로販賣되고 있거나販賣될可能性이 있다고 믿거나의심할만한合理的根據가 있는지를豫備의으로判定해야하는데 이豫備判定이肯定의이면問題된商品의輸入에外國市場價格이美國內市場價格을超過하는推定差額만큼의留置金을賦課한다. 이는調査期間중暫定의輸入規制조치로美國內產業을保護하고輸入을抑制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ITA의豫備判定이否定의인경우에도節次는終了되지않는다.

네째, 위 ITA의豫備判定이있은뒤75일이내에(복잡한경우에135일까지연장가능)ITA는問題된商品이美國內에서公正價格以下로販賣되거나販賣될possibility이있는가를최종적으로判定하여야한다. 이判定이否定의이면 절차는 종료된다.

다섯째, ITA의最終判定이肯定의이면 ITC는ITA의肯定의인豫備判定日로부터120일내또는ITA의肯定의인最终判定일로부터45일내중늦은쪽의도래이전에實質的被害與否를最终判定해야한다. ITA의예비判定이부정적이고, 최종判定이肯定의인경우에는公正적인最终判定뒤75일내에ITC의最终判定이있어야한다. ITC의最终判定은裁判에유사한청문을거쳐서행해지는데最终判定이公正적이면ITA는그商品에대해덤핑關稅율을정하여反dumping關稅賦課命令을발한다.

(다)덤핑조사진행중당사자가請願을 철회하거나輸出業者가公正價格以下판매의완전제거또는문제된商品의對美輸出中斷에 同意하는경우기타문제된商品의對美輸出로인한有害效果를제거하겠다고수락하는경우에는ITA는조사를中斷할수있다.

3. 相計關稅의 경우

相計關稅調查의 경우도反dumping關稅調查의 경우와 거의 같다. 즉 ITA는보조금의존재유무를조사하고ITC는問題된商品이GATT의補助金協約加入國으로부터輸出된것인때에한하여미국내產業에의實質的被害여부를調査하게된다.相計關稅調查節次上反dumping關稅調查와다른것은調查期限에관한事項으로서첫째,相計關稅의경우ITA의豫備의判定이請願書接受뒤85일이내(복잡한경우150일까지연장가능)에행해져야하고둘째,ITA의最终判定은예비判定이있은뒤75일이내에행해져야한다는점등이다.

4. 司法審查와 再審

ITC나 ITA의 최종적 判定이 행해진 뒤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모든 利害當事者는 國際貿易法院(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그 判定의 適法性 與否를 提訴할 수 있다. 또한 발효중인 相計關稅 및 反dumping關稅命令에 관하여는 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경우 1년에 1회 다시 심사하여 ITA는 새로운 關稅率을 策定할 수 있고 ITC는 被害與否를 다시 審查할 수 있다. 이때 關稅賦課命令을 取消하려는 當事者는 合理的인 事情 變更 事實을 證明하여야 한다. 그러나 實體상으로 한번 相計關稅 또는 反dumping關稅調査를 받은 外國의 輸出業者는 輸出禁止 등 美國市場에서 後退하게 되는 것이 一般的인 現像이다.

V. 美國內 產業의 實質的 被害

1. 概 要

相計關稅나 反dumping關稅의 要件인 美國內 產業에 대한 被害判定은 ITC의 관장사항으로서 매우 복잡하면서도 불명확한 점이 많다. 여기서의 “미國內 產業의 被害”는 補助金을 받은 商品 또는 公正價格 이하로 販賣된 商品의 輸入으로 인해 美國內 產業이 實質적으로 被害를 입거나 被害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產業의 穩乏이 實質적으로 저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被害要件은 輸入된 商品이 해로운 影響을 미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交易을 保障하는 GATT의 補助金 協約이나 反dumping 協約의 趣旨에 따른 것이긴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要件의 緩和適用 내지는 判定基準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趣旨를 몰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2. 被害判定의 段階

ITC의 被害判定은 3가지 主要部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問題된 商品의 輸入으로 인하여 影響을 받는 美國內 產業의 範圍를 決定하는 일이다. 19USCA 제1677은 “產業”을 同種物品의 國內生產者 全體 또는 同種物品의 合計生產量이 그 物品의 國內 總生產量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生產者들이라고 定意한 다음 “同種物品”에 관하여는 同種의 物品이거나 同種의 物品이 없을 경우 “特徵과 用度에 있어서 가장 類似한 物品”이라고 막연하게 規定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경우 決定權이 ITC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ITC는 同種物品을 特徵과 用度, 相互 代替可能性, 價格, 製造過程 등을 고려요소로 하여 事件별로 決定하고 있지만 그 基準

이 일정치 않고⁹⁾, 나아가 “國內 總生產量의 대부분”이라는 規定도 명확하지 않아 때로는 10% 만으로도 充分하다고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50%로도 불충분하다고 한 경우도 있다.

둘째, 實質的 被害가 있는가 與否를 決定하는 일이다. ITC는 價格과 利潤의 低下, 賣出損失, 雇傭減少, 그리고 絶對的 및 相對的 基準에 의한 輸入의 增加와 같은 客觀的인 關聯要因들을 評價해서 實質的 被害與否를 判定하여야 하는데 調查對象 物品이 2개국 이상으로부터 輸入되어相互競爭하거나 美國의 同種物品과 競爭할 경우 그러한 모든 輸入物品의 物量과 效果를 누적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어 이로 인하여 美國에 적은 양의 商品을 輸出하는 外國企業이 의외로 큰 影響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이 “實質的 被害”인가 하는것이다. 1979년에 개정된 19USCA 제 1637은 實質的 被害를 사소하거나 實質的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없는 손해라고 정의하여 實質的인 被害를 要件으로 하는 GATT의 反덤핑 協約에 일치되는 듯한 表現을 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適用에 있어서는 美國이 1979년 위 反덤핑 協約을 承認하기 이전까지 써오던 1921년 反덤핑法의 要件인 단순 “被害”에 대한 解釋과 달라진 것이 없이 적용하고 있다. 즉 美國 上院의 報告書는 물론 ITC도 최소한 정도 이상의 被害는 모두 實質的인 被害라고 봄으로써¹⁰⁾ 法文上으로만 요건이 強化 되었을 뿐 實제로는 過去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세재, 國內產業에 대한 被害가 問題된 商品의 輸入으로 인한 것인가를 決定하는 일이다. 이러한 因果關係를 決定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어떤 기준도 법상 또는 沿革上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로 ITC는 문제된 輸入商品이 조금이라도 國내產業의 유해로운 상태에 기여 했다고 보여지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判定하고 있는데 이는公正價格以下의 販賣로 인한 影響을 통해 그商品의 輸入이 國내市場에 被害를 초래할 것을 요구하는 GATT의 反덤핑 協約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

VI. 結論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相計關稅 및 反덤핑 關稅에 관한 美國 통상법상의 制度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法律의in 규정의 측면에서는 補助金 範圍의 부당한 확대, 덤플조사상 證據法則의 不當性, 完製品이 아닌 部品까지의 擴大適用, 生產費 以下 販賣의 考慮對象 除外 등 國際的 基準인

9) 유재풍, The Scope of Domestic Industry under the U.S. Trade Agreement Act of 1979, 군사법 논문집 제9집 (공군본부, 1990), p.160 참조

10) Kassinger & Johnson, Jr., supra note 19, at 42 de minimis라 함은 너무 사소하여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푼돈, 또는 몇 달러 정도내지 그 이하”에 불과한 액수를 말한다. (S.H. Gifis, Law Dictionary, 125-1985)

GATT의 反dumping協約 및補助金協約에 위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적용면에 있어서도 철금속, 직물, 化工製品, 고무, 플라스틱 등 한정된 分野에 걸쳐 주로 開發途上國의 소규모 國際去來 경험없는 輸出業者에게만 발동하는 등 지극히恣意的이고 不公正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유롭고公正한 貿易去來를 위협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8년의 綜合貿易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은 商務部로 하여금 既存의 反dumping 關稅賦課命令의 범주내에 同種 또는 類似種類의 物品으로 조립될 目的으로 美國內에 輸入되는 部品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고 第3國에서 組立 또는 完成된 製品에 대해서도 相計關稅나 反dumping 關稅를 賦課할 수 있게 하는 한편 既存의 關稅賦課命令이 사소한 變更이 가해진 商品에 대해서도 適用되게 하는 등 關稅賦課의 對象을 擴大하였다.

自國製品의 國際價格競爭力弱化로慢性的인 貿易赤字를 기록하고 있는 美國으로서는¹¹⁾ 앞으로도 계속 輸入規制를 強化하면서 外國에 대하여는 市場開放壓力을 加重시킬 것이豫想되는 바, 美國을 가장 큰 輸出市場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는 美國의 이러한 貿易政策 및 關聯法令 등을 綿密히 檢討하고 熟知함으로써 不當한 被害를 당하지 않도록 對備하여야 할 것이다.



- 1) 吳世昌, 貿易契約論,(東星社, 1991)
- 2) 玉濬鍾, 貿易契約論,(法文社, 1990)
- 3) 徐希源, 改稿新版 國際私法講義,(一潮閣, 1987)
- 4) 松岡博, 國際去來 國際私法,(眺洋書房, 1993)
- 5) 松枝柚夫, 國際去來法,(三省堂, 1993)
- 6) 松下滿雄, 國際經濟法,(有斐閣, 1988)
- 7) 岩崎一生, 國際取引法要說,(同文館, 1990)
- 8) 澤木敬郎, 國際私法入門,(有斐閣, 1991)
- 9) 澤田磐夫외 9명, 國際去來法講義,(有斐閣, 1987)

11) 1950-1960년대를 통하여 세계무역 규모의 확대에 주력해 왔던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국제경쟁력 저하로 점점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1987년에는 급기야 1억 7000만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아직도 계속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The Restatement as Prologue to Tumult in the Law : A Commentary on the Restatement of U.S. International Trade Law, 24 The International Lawyer 315, 322 (1990)